

A Study on the Master Plan for Foreign Residents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in Goyang City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성훈
오은지

A Study on the Master Plan for Foreign Residents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in Goyang City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책임자

전성훈(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오은지(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발행일 2020년 11월 15일

저자 전성훈, 오은지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89636-82-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요 약	i
제1장 기본계획의 개요	1
제1절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	3
제2절 기본계획의 위상과 범위	7
제2장 제1차 기본계획 수립 환경 분석	11
제1절 국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	13
제2절 고양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	19
제3절 중앙정부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정책 경향 분석	25
제4절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행정수요 분석	50
제3장 제1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59
제1절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핵심가치	61
제2절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	65
제3절 제1차 기본계획의 구조체계	67
제4장 제1차 기본계획의 전략과제별 세부과제	69
제1절 정책목표 I	71
제2절 정책목표 II	95
제3절 정책목표 III	110
제4절 연도별 추진계획	123

제5장 제1차 기본계획 평가지표	127
제1절 평가지표 체계	129
제2절 세부과제별 평가지표	133
참고문헌	137
Abstract	139

표 목차

[표 1-1]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및 위상	7
[표 1-2] 기본계획의 추진경과	9
[표 2-1]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현황	13
[표 2-2]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수	15
[표 2-3]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16
[표 2-4]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17
[표 2-5] 고양시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현황	19
[표 2-6] 고양시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20
[표 2-7] 고양시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현황	22
[표 2-8] 고양시 결혼이민자 성별 현황	23
[표 2-9] 재한외국인 관련 법령체계	25
[표 2-10]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26
[표 2-1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경과	27
[표 2-12]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의 비전 및 목표	28
[표 2-13]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29
[표 2-14]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비전 및 목표	30
[표 2-15]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32
[표 2-16] 제3차 기본계획의 차별성	34
[표 2-17]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및 목표	35
[표 2-18] 정책목표별 세부 추진과제 현황	36
[표 2-19] 연도별 투입 예산 규모 추계	37
[표 2-20] 정책목표별 연도별 투입 예산 규모 추계	38
[표 2-21]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39
[표 2-2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경과	40

[표 2-23]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의 비전 및 목표	41
[표 2-24]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42
[표 2-25]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비전 및 목표	44
[표 2-26]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45
[표 2-27]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및 목표	47
[표 2-28]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현황	48
[표 2-29] 정책과제별 투입 예산 규모	49
[표 2-30] 다문화가족 실증조사 체계	51
[표 2-31] 외국인주민 실증조사 체계	53
[표 3-1] 고양시 민선 7기 미래상(VISION)	62
[표 5-1] 세부과제별 공통지표체계	133
[표 5-2] 세부과제별 특성지표체계	13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목적	6
[그림 1-2] 기본계획의 범위	9
[그림 2-1]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14
[그림 2-2] 행정수요 분석체계	50
[그림 3-1] 고양시정 슬로건 및 시정목표	61
[그림 3-2]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비전	63
[그림 3-3]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가치	64
[그림 3-4]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목표	65
[그림 3-5]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전략과제	66
[그림 3-6]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구조체계	67
[그림 4-1] 정책목표 I 구조체계	72
[그림 4-2] 정책목표 II 구조체계	96
[그림 4-3] 정책목표 III 구조체계	111
[그림 5-1] 성과평가모형 체계	130
[그림 5-2] 평가지표 체계	132

요 약

1. 기본계획 배경 및 목적

□ 기본계획 수립배경

○ 2018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각각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각각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며, 2018년 제3차 기본계획(2018 ~ 2022)이 수립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현행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며, 5대 정책목표와 13대 중점과제를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제3차 기본계획은 과거 10년간의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민자의 양적 확대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사회통합 체계 마련과 참여 증진 전략에 체류·영주·국적 등 단계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꾀하였음
- 이는 세계적으로 일본, 중국 등과 같이 우수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주체 확보 차원의 적극적인 이민문화 개방과 미국, 영국과 같은 반(反)이민 문화 확대 등의 고려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비 증가와 같은 국내 여건을 반영한 것임

- 한편,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정책목표와 5개 대과제, 17개 중과제 및 70개의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도입 및 성장기’에서 ‘정착기’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 장기화와 다양한 가족유형 발생에 따른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다문화 자녀를 비롯한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학업 및 사회진출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지원,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등 기존 기본계획과의 차별화를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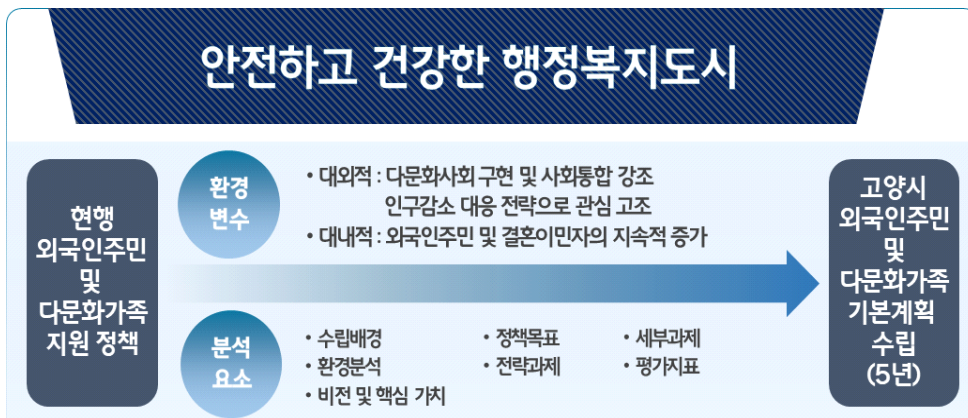
○ 고양시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대응 필요

-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고양시 관내 외국인주민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7.4%의 증감률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양시 전체 인구 대비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특성에 따른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적 미취득자가 2015년 16,349명에서 2018년 현재 17,961명으로 국적 취득자는 2015년 2,054명에서 2018년 현재 2,408명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적 미취득자들 중 외국인근로자가 5,10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외국국적동포 3,867명, 결혼이민자 2,635명, 유학생 416명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음
- 더불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비교하여 2017년 현재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는 7위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인구 대비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여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수와 이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건대,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 및 고양시민의 인식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정책이 요구됨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 체계 수립 필요**

- 고양시는 2008년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및 2012년 전문개정을 통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안정화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공고히 하여 왔으며, 특히 2020년 7월 일부개정을 통해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은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 맥을 함께하되, 고양시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외국인주민은 개별 수혜자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은 가족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기본 및 실행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2. 제1차 기본계획의 구조체계



3. 기본계획 평가지표



제 1 장

기본계획의 개요

제1절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

제2절 기본계획의 위상과 범위

제3절 기본계획 수립 방법과 추진경과

제1절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목적

1. 기본계획의 수립배경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각각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고, 2018년 제3차 기본계획(2018 ~ 2022)이 수립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며, 5대 정책목표와 13대 중점과제를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과거 10년간의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민자의 양적 확대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사회통합 체계 마련과 참여 증진 전략에 체류·영주·국적 등 단계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꾀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일본, 중국 등과 같이 우수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 주체 확보 차원의 적극적인 이민문화 개방과 미국, 영국과 같은 반(反)이민 문화 확대 등의 고려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비 증가와 같은 국내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3대 정책목표와 5개 대과제, 17개 중과제 및 70개의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도입 및 성장기’에서 ‘정착기’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 장기화와 다양한 가족유형 발생에 따른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다문화 자녀를 비롯한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학업 및 사회진출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등 기존 기본계획과의 차별화를 진행하였다.

한편,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고양시 관내 외국인주민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전년대비 7.4%의 증감률로 가파른 상승

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양시 전체 인구 대비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특성에 따른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적 미취득자가 2015년 16,349명에서 2018년 현재 17,961명으로 국적 취득자는 2015년 2,054명에서 2018년 현재 2,408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8년 현재 국적 미취득자들 중 외국인근로자가 5,10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국적동포 3,867명, 결혼이민자 2,635명, 유학생 416명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비교하여 2017년 현재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는 7위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인구 대비 약 1.4%의 비중을 차지하여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수와 이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건대,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 및 고양시 민의 인식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고양시는 2008년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및 2012년 전문개정을 통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안정화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공고히 하여 왔으며, 특히 2020년 7월 일부개정을 통해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은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그 맥을 함께하되, 고양시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외국인주민은 개별 수혜자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은 가족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기본 및 실행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2020년 ‘외국인정책 실행계획’에 도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중앙과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외국인 대상 정책의 정부 간 연계체계가 생성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다만, 기존의 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top-down) 접근방법이 아닌 상향적(bottom-up) 접근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중앙과 기초 간의 연계자 또는 보충적 역할을 하며,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에서의 거시적인 역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2. 기본계획의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양시 관내에서 합법적으로 90일 이상 장기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이 요구된다. 고양시 관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그들의 행정수요, 욕구 등을 분석하여 제1차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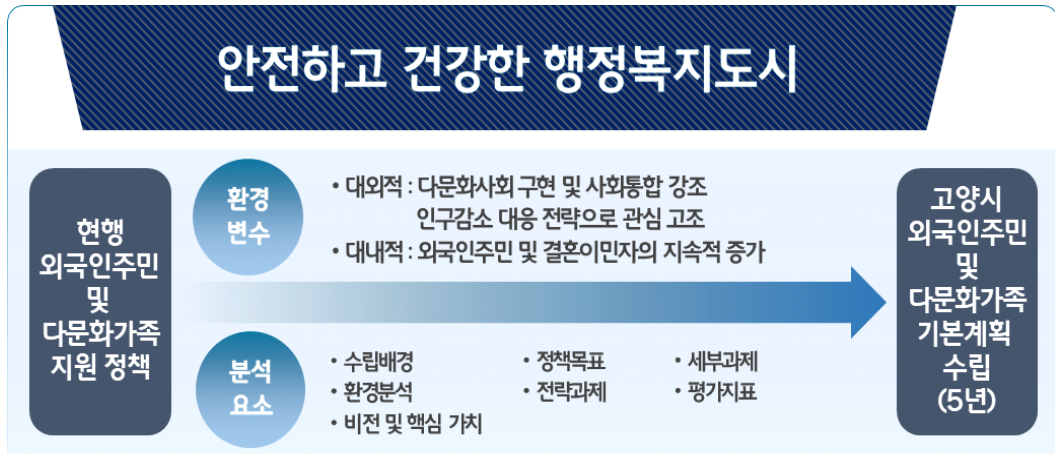
둘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비전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 앞서 연구된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2019)’와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2020)’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정방침과 정책수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비전과 핵심가치, 정책목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전략과제 제시가 요청된다.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되, 수요자 중심에서 상향적(bottom-up) 접근방법을 활용하며, 연도별 시행계획까지 포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체계 개발

이 반드시 요구된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전략과제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선순환 평가체계(수립-실행-평가-결과반영) 구축하여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탄력적 대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연구의 목적



제2절 기본계획의 위상과 범위

1. 기본계획의 위상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 그리고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처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법무부를 필두로 하여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와 제3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5조의2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특히 당해 계획은 언급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의무규정으로 수립·시행되는 것인 바, 법적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표 1-1]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및 위상

구분		조항	주요 내용
법 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5조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분	조항	주요 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의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조례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의 범위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본 연구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적 범위는 고양시 관내로 한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된 점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결정 과정을 고려하여, 기준연도는 2022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설정한다.

다음으로 대상적 범위는 고양시 관내에서 90일 이상 장기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유학생, 중도입국자녀, 그리고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등 외국인주민과 내국인 배우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을 핵심 대상으로 한정한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고양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중·장기적 비전과 핵심가치, 전략목표 및 과제, 세부시행계획 등과 함께 선순환 정책과정의 연계를 위한 평가지표 체계까지 포괄하여 하나의 완전성을 지닌 기본계획으로 설정한다.

[그림 1-2] 기본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대상적 범위	내용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년도: 2020년 목표년도: 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및 핵심 가치 전략과제, 평가체계

3. 기본계획 추진경과

고양시의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수립은 2019년 7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2020년 2월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기초자료 확보를 마무리하고, 동년 7월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20년 8월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외국인주민 기본계획 수립TF’가 구성되었고, 1차부터 5차까지의 실무회의를 바탕으로 동년 11월 제1차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표 1-2] 기본계획의 추진경과

연월	주요 내용
2019. 07.	▣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과제 착수
2019. 12.	▣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과제 최종완료
2020. 02.	▣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과제 착수
2020. 07.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전문개정 및 제5조의2(연도별 시행계획) 신설
2020. 08.	▣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과제 최종완료
2020. 08.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과제 착수
2020. 09.	▣ ‘외국인주민 기본계획 수립TF’ 구성
2020. 10.	▣ ‘외국인주민 기본계획 수립TF’ 제1차 ~ 제3차 개최

연월	주요 내용
2020. 11.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과제 최종완료
2021. 04.	▣ 제1차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수립(2022 ~ 2025)

제 2 장

제차 기본계획 수립 환경 분석

제1절 국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

제2절 고양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

제3절 중앙정부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정책 경향 분석

제4절 고양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행정수요 분석

제절 국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

1. 국내 등록 외국인 현황

1)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등록외국인은 2010년 918,917명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1,271,807명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천 명당 등록외국인 수의 경우, 2010년 18.19명에서 2019년 24.53명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1]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등록 외국인	918,917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전체 인구	50,515,666	50,734,284	50,948,272	51,141,463	51,327,916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18.19	19.36	18.31	19.28	21.27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록 외국인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전체 인구	51,529,338	51,696,216	51,778,544	51,826,059	51,849,861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22.18	22.47	22.63	24.05	24.53

주.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명)=(등록외국인수/주민등록인구)×1,000
 <출처> 국가통계포털,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시도/시/군/구). (<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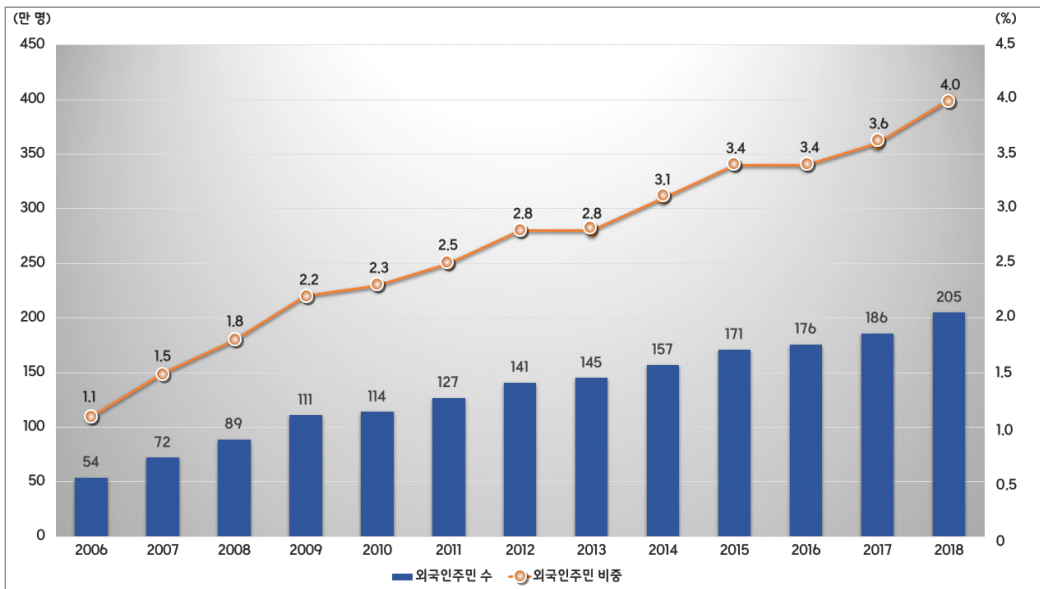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입국 연도를 살펴본 결과, 1989년 이전에는 6,584명이었다가 2005년~2009년 사이에 127,798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총 356,707명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분류하여 살펴봤을 때 2018년에는 여성이 148,999명, 남성이 207,708명으로 약 1.4배 많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주민의 증감 및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최초 조사 시기인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수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년에는 54만 명이었던 외국인 주민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205만 명으로 약 3.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주민등록인구 대비 1.1%에서 2018년 총 인구 대비 4.0%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단위: %, 명)



주. '06년 최초 조사 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p. 2, 2019.

2)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수를 2010년부터 시계열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류자격에 따른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E-2), 결

혼이민(F-1, F-2, F-6) 자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F-5)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유학생(D-2, D-4) 수도 2014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인력(E-1~E-7)의 경우 등록외국인 중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전문인력 유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2]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수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전문취업 (E-9)	217,108	231,248	225,001	241,098	265,256	271,310	274,168	273,406	274,727	270,751
방문취업 (H-2)	282,801	300,554	235,147	235,182	279,291	282,995	250,005	225,455	246,189	223,513
전문인력 (E-1~E-7)	42,550	45,497	48,541	48,504	47,607	46,726	46,658	44,680	44,596	44,143
유학생 (D-2,4)	106,874	103,590	84,897	82,136	86,048	96,132	113,297	132,015	157,667	176,941
영주 (F-5)	45,475	64,979	84,140	100,169	112,519	123,033	130,011	136,118	141,973	153,038
결혼이민 (F-1,2,6)	178,830	185,256	198,914	214,457	225,702	241,633	261,152	270,785	280,741	293,565
기타	45,279	51,337	56,343	64,377	75,108	81,258	86,386	89,303	100,733	109,856
외국인 합계	918,917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자료〉 법무부. “지역 및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각 년도.

2. 국내 다문화가족 현황

1)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국내 다문화가족 주요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 보면 2009년 199,398명에서 2018년 343,797명으로 10년간 약 1.7배 증가하였다. 성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2009년에는 남성이 15.5%, 여성이 84.5%의 비중을 차지 하였으나 2018년에는 남성이 20.2%, 여성이 79.8%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에서 남

성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서 결혼이민자 대상 정책의 성별을 여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위한 정책의 다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3]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2009	199,398	30,988	168,410	125,673	15,190	110,483	41,417	2,047	39,370	32,308	13,751	18,557	
2010	221,548	34,144	187,404	125,087	15,876	109,211	56,584	3,796	52,788	39,877	14,472	25,405	
2011	252,764	39,825	212,939	141,654	18,561	123,093	69,804	4,317	65,487	41,306	16,947	24,359	
2012	267,727	42,459	225,268	144,214	19,630	124,584	76,473	4,268	72,205	47,040	18,561	28,479	
2013	281,295	45,348	235,947	147,591	20,887	126,704	83,929	4,264	79,665	49,775	20,197	29,578	
2014	295,842	48,787	247,055	149,764	21,953	127,811	90,439	4,261	86,178	55,639	22,573	33,066	
2015	294,663	56,652	238,011	144,912	25,263	119,649	93,249	10,308	82,941	56,502	21,081	35,421	
연도	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6	318,948	61,544	257,404	159,501	28,728	130,773	159,447			32,816			126,631
2017	330,188	65,507	264,681	160,653	30,745	129,908	169,535			34,762			134,773
2018	343,797	69,515	274,282	166,882	32,858	134,024	176,915			36,657			140,258

주. '16년부터 귀화요인(혼인 등) 미구분
 <자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현황』, 2020.

2)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등 국적취득자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과 중국 국적이 10년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주해온 결혼이민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4]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294,663	318,948	330,188	343,797
중국 (한국계)	77,853	87,565	88,922	97,796	100,524	103,194	103,171	110,619	114,101	119,989
중국	53,864	60,183	69,671	65,832	67,944	71,661	59,813	64,524	67,257	68,304
베트남	31,080	34,913	42,159	47,754	52,323	56,332	62,072	66,554	69,774	72,137
필리핀	10,150	10,868	12,428	13,829	15,256	16,473	17,576	18,247	18,695	19,199
일본	5,742	5,594	11,070	11,705	12,338	12,875	11,391	11,278	12,117	12,302
캄보디아	-	3,354	4,422	5,316	5,684	6,184	6,902	7,221	7,621	7,958
몽골	2,591	2,665	2,959	3,068	3,186	3,257	3,308	3,394	3,523	3,663
태국	2,291	2,350	2,914	2,918	2,975	3,088	3,069	3,328	3,803	4,526
미국	1,911	1,890	2,598	2,747	3,081	3,350	5,368	7,377	7,711	8,402
러시아	1,162	1,279	1,827	1,943	2,025	1,976	1,937	1,895	2,253	1,892
대만	1,211	1,856	1,836	2,390	2,661	2,953	4,298	4,552	5,308	4,066
기타	11,543	9,031	11,958	12,429	13,298	14,499	15,758	19,959	18,025	21,359

〈자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현황』, 2020.

3. 국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 요약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등록 외국인의 경우, 지난 10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약 1.4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구 천 명당 등록외국인의 수 또한 2010년 18.19명에서 2019년 24.53명으로 나타났다. 입국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2005~2009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총 356,707명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비중을 연도별 추이로 확인해본 결과, 2006년 1.1%

에서 2018년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추이를 확인해보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E-2), 결혼이민(F-1, F-2, F-6) 자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편 유학생(D-2, D-4)도 2014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인력 비중이 여전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외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다문화가족의 현황으로서 주요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9년 199,398명에서 2018년 343,797명으로 10년간 약 1.7배 증가하였다. 한편 성별로 분류하여 살펴볼 때 남성의 비중이 2009년 15.5%에서 2018년 20.2%로 점진적 증가세를 보여,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서 결혼이민자 대상 정책의 성별을 여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위한 정책의 다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고양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

1. 고양시 등록 외국인 현황

1) 고양시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현황

고양시에 등록된 외국인의 수를 10년에 걸쳐 살펴보면, 2010년 12,182에서 2019년 12,508명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양시 전체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2010년부터 10년간 꾸준히 11~12명인 것으로 집계 되어 외국인주민 또한 고양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표 2-5] 고양시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고양시 등록 외국인	12,182	12,426	11,304	11,371	11,859
고양시 전체 인구	950,115	961,239	969,916	990,571	1,006,154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12.82	12.93	11.65	11.48	11.79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고양시 등록 외국인	12,293	12,286	12,253	12,664	12,508
고양시 전체 인구	1,027,546	1,039,684	1,041,983	1,044,189	1,066,351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	11.96	11.82	11.76	12.13	11.73

주. 인구 천 명당 외국인수(명)=(등록외국인수/주민등록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 천 명당 외국인수(시도/시/군/구)”. (<http://kosis.kr/>)

2) 고양시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유형에 따른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5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국적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지속적 유입과 이에 따른 외국인주민자녀 출생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주민을 구성하는 유형이 점차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고양시 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년도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2009	15,846	13,523	8,389	2,086	167	1,281	1,600	1,151	1,172
2010	16,031	13,621	8,320	2,029	195	1,400	1,677	1,390	1,020
2011	17,478	14,119	7,566	2,279	236	1,937	2,101	1,796	1,563
2012	19,208	15,430	7,634	2,317	258	3,004	2,217	1,877	1,901
2013	19,360	15,235	6,168	2,319	308	3,931	2,509	1,934	2,191
2014	20,638	16,194	5,999	2,392	256	4,823	2,724	2,008	2,436
2015	22,026	17,361	6,382	2,310	246	5,522	2,901	2,158	2,507
2016	21,340	16,516	5,306	2,505	356	3,465	4,884	2,193	2,631
2017	21,668	16,522	4,920	2,553	394	3,761	4,894	2,331	2,815
2018	23,397	17,951	5,106	2,635	416	3,867	5,937	2,408	3,028

<출처> 행정안전부,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년도.

2. 고양시 다문화가족 현황

1) 고양시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고양시 관내 다문화가구와 가구원 현황을 일반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양시 관내 다문화가구의 경우 2015년 4,548개에서 2019년 5,360개로 큰 증가 폭을 보였고 2019년 기준, 고양시 전체 다문화가구의 46.9%는 덕양구(2,516개)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구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 혹은 자녀 등 현재 국적이 한국인인 ‘국내 출생 내국인’이 가장 많았고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덕양구에 다문화가구원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고양시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현황

(단위: 개, 명)

년도	구분	다문화가구	다문화 가구원				
			계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기타)
2015	고양시	4,548	13,280	8,524	2,044	2,164	548
	덕양구	2,142	6,318	4,050	970	1,058	240
	일산동구	1,249	3,568	2,318	521	587	142
	일산서구	1,157	3,394	2,156	553	519	166
2016	고양시	4,805	14,298	8,997	2,187	2,499	615
	덕양구	2,220	6,709	4,210	1,046	1,140	313
	일산동구	1,340	3,837	2,441	555	721	120
	일산서구	1,245	3,752	2,346	586	638	182
2017	고양시	4,772	14,207	8,712	2,320	2,548	627
	덕양구	2,190	6,617	4,075	1,099	1,165	278
	일산동구	1,344	3,890	2,414	597	731	148
	일산서구	1,238	3,700	2,223	624	652	201
2018	고양시	4,981	14,864	9,180	2,389	2,633	662
	덕양구	2,292	6,933	4,300	1,132	1,195	306
	일산동구	1,415	4,075	2,537	609	781	148
	일산서구	1,274	3,856	2,343	648	657	208
2019	고양시	5,360	16,015	9,976	2,588	2,776	675
	덕양구	2,516	7,600	4,781	1,214	1,285	320
	일산동구	1,475	4,271	2,676	658	796	141
	일산서구	1,369	4,144	2,519	716	685	214

<출처> 통계청,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시군구”, 『인구총조사』, 각 년도.

2) 고양시 결혼이민자 성별 현황

전국 결혼이민자의 성별 현황과의 비교를 위해 고양시 관내 다문화가구원 중 결

혼이민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양시 전체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2010년 2,279명에서 2018년 2,478명으로 2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비율로 살펴보면 남성이 2010년 16.4%에서 2018년 18.6%로 비중이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국단위 결혼이민자 성별의 변화와 유사한 양상으로, 결혼이민 남성에 대한 정책 필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8] 고양시 결혼이민자 성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성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고양시 전체	총계	2,279	2,317	2,319	2,392	2,330	2,379	2,447	2,462	2,478
	남자	373	389	419	428	414	412	416	437	461
	여자	1,906	1,928	1,900	1,964	1,916	1,967	2,031	2,025	2,017
덕양구	소계	1,070	1,077	1,040	1,085	1,097	1,110	1,112	1,124	1,135
	남자	141	145	148	157	164	160	161	165	181
	여자	929	932	892	928	933	950	951	959	954
일산동구	소계	634	661	710	717	675	682	722	715	727
	남자	126	140	157	150	141	147	153	153	156
	여자	508	521	553	567	534	535	569	562	571
일산서구	소계	575	579	569	590	558	587	613	623	616
	남자	106	104	114	121	109	105	102	119	124
	여자	469	475	455	469	449	482	511	504	492

〈출처〉 통계청, “결혼이민자 성별 현황”, “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각 년도.

3. 고양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현황 요약

고양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등록외국인의 경우 고양시 전체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가 2010년부터 10년간 꾸준히 11~12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외국인주민 또한 고양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유형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10년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9년 외국인근로자가 전체의 5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국적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지속적 유입과 이에 따른 외국인주민자녀의 출생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주민을 구성하는 유형 또한 점차 다양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양시 관내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구의 경우 2015년 4,548개에서 2019년 5,360개로 큰 증가폭을 보였고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덕양구가 2,516개로 고양시 전체 다문화가구의 46.9%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구의 경우 한국인배우자 혹은 자녀 등 현재 국적이 한국인인 ‘국내 출생 내국인’이 가장 많았고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덕양구에 다문화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에서 성별에 따른 결혼이민자 수와 비교하기 위해 고양시 관내 결혼이민자의 성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이 2010년 16.4%에서 2018년 18.6%로 비중이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국단위 결혼이민자 성별의 변화와 유사한 양상으로, 결혼이민남성에 대한 정책 필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3절 중앙정부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정책 경향분석

1. 외국인정책 경향분석

1) 추진체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출입국관리법」 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 등에 근거하며, 모두 법무부의 소관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법무부 주도의 외국인정책은 「외국인처우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외국인을 관리 및 규제 대상으로 인식한 분절적 정책이 아닌, 그들에게 합당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이해 대상이며, 나아가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의 한 축이 되는 대상으로서의 지원정책을 의미한다(전성훈·오은지, 2020).

[표 2-9] 재한외국인 관련 법령체계

구분	주요내용		
법률명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1963년	1999년	2007년
목적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규정	대한민국에의 재외동포 출입국과 그들의 법적 지위 규정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및 사회통합 규정
정책대상	국민, 외국인, 난민 등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주요내용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외국인의 등록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국내거소신고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등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정책위원회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구분	주요내용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제퇴거 등 선박등의 검색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보훈급여금	결혼이민자 처우 영주권자의 처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민간 협력 및 국제교류
소관부처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자료〉 전성훈·오은지,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고양시정연구원』, 2020. p88.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법무부에서 수립하며,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위임사무 내)에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7년 「외국인처우법」이 제정된 이후 2008년 제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2018년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한편, 동 기본계획은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방법, 시기’,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동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또한 위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와 평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9인 이내, 그리고 법무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한 15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다(「외국인처우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동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평가, 재한외국인의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외국인처우법」 제8조).

[표 2-10]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구분	주요 내용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
정책 대상	▣ 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구분	주요 내용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처우법」 제5조 및 제6조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중(2018 ~ 2022년)
전담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외국인처우법」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국무총리 - 위원: 법무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한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전문가

〈자료〉 전성훈·오은지,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고양시정연구원, 2020, p92.

2) 추진경과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은 2008년 제1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 제2차 기본계획, 2018년 제3차 기본계획으로 연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08년 12월에 심의·확정되었으며, 제2차 기본계획은 2012년 11월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되어 연도별 시행계획과 함께 추진되었다(전성훈·오은지, 2020).

더불어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2016년 연구용역 및 정책자문, 2017년 전문가 세미나 및 관계부처 간담회,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2018년 2월 수립되었다.

[표 2-1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경과

연월	주요 내용
2007.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규정, 외국인정책위원회 출범
20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08 ~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
20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3 ~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
201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정책자문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연월	주요 내용
2017.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세미나 및 관계부처 간담회 개최 ▣ 기본계획 작성자집 토크
2017.09.	▣ 인권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2017.10.	▣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기본계획(안) 부처 의견수렴
2017.11.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7.12.	▣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개최
2018.02.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8 ~ 2022)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pp. 9-17.

3) 역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성과

(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성과

2008년 12월 수립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 ~ 2012)은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계 일류국가’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그리고 ‘외국인 인권 옹호’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시행되었으며, 개별 정책과제는 중점과제로 세분화되어 총 13개 과제가 채택되었다.

[표 2-12]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의 비전 및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비 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정 책 목 표	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 옹호
중 점 과 제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구 분	주요 내용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정보 관리
	3-3.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 p. 13.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4대 정책목표 및 169개 세부 추진과제에 총 1조 3천 364억원이 투입되었고(중앙정부 6천 406억원, 지방자치단체 6천 958억원), 중앙정부는 연평균 약 28%, 지방자치단체는 약 8%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사회통합 분야의 예산이 전체의 5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편중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고, 재한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중심의 지원, 법질서 위반 외국인의 증가, 국제협력과 이민정책 간의 연계 부족 등 추진상의 한계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표 2-13]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구 분		2009	2010	2011	2012
과제 수(개)	중앙	190	173	165	149
	지방	588	734	858	804
	합계	778	907	1,023	953
투입 예산 (억원, %)	중앙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6,406억원 투입 ■ 연평균 약 28% 예산 증가 ■ 정책목표별 예산비율			
		국가경쟁력 강화 37.0%	사회통합 54.0%	이민행정 4.0%	인권 옹호 5.0%
	지방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6,958억원 투입 ■ 연평균 약 8% 예산 증가			
정책 목표별 주요 추진성과	국가 경쟁력강화	■ 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유치 전략 최초 도입 - Contact Korea, Hunet Korea 시스템 구축 및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기준 완화 - 영주 자격 요건 완화 - 우수 인재의 제한적 복수 국적 허용 등			
	사회통합	■ 사회 전 분야에서 이민자 지원에 대한 관심과 사업 급증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이민행정		- 부처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이민자 지원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등 체계적 지원노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구축 등			
		■ 국경관리 과학화 및 고객만족의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고 -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 구축(2008) - 출국승객 정보분석 시스템 도입(2009) - 국민 입국심사인 날인생략(2010) - 전자여권 판독시스템 구축(2011) - 외국인지문 얼굴확인제도 시행(2012)			
	인권옹호	■ 난민법 제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이자스민 당사자가 언급된 트위터 544만여 개 가운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의견이 84%에 달함(2012. 4. 19)			
한계 및 문제점	■ 단순기능 인력 편중 심화 및 정주화 증가 우려 ■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의 편중 및 용어사용 혼란 ■ 법질서 위반 외국인이 증가하는 등 이민자 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 ■ 우리나라의 국제 신장에 비해 이민자 출신국과의 공동발전을 위한 관심과 역할 부족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2, pp. 12-16.

(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성과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앞서 언급한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상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수립되었으며,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5개의 핵심가치를 제시하였다.

정책목표는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등으로 설정되었고, 개별 정책목표는 중점과제로 세분화되어 총 19개 과제가 채택되어 시행되었다.

[표 2-14]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비전 및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비 전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정 책	1. 개방 -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구 분	주요 내용
목 표	2. 통합 -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3. 인권 -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4. 안전 -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5. 협력 -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중 점 과 제	1-1.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1-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1-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1-4.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2-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2-3.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2-4.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3-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3-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4-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4-2.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4-3.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4-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5-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5-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5-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2, p. 2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대 정책목표 및 146개 세부추진과제에 총 3조 3천 107억원이 투입되었고(중앙정부 2조 1천 770억원, 지방자치단체 1조 1천 337억원), 법무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은 2013년 194개의 추진 과제에서 2017년 189개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3년 948개에서 2017년 1,059개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당초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시행 이후에도 결혼이민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형평성에 대

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실행 체계 부족,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민간 간의 협력체계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우수 외국인재 유치의 미흡으로 단순기능 인력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 등과 같은 분야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까지 발생되었다.

[표 2-15]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17										
과제 수(개)	중앙	194	207	201	198	189										
	지방	948	1,065	965	1,025	1,059										
	합계	1,142	1,272	1,166	1,223	1,248										
투입예산 (억원, %)	중앙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조1천770억원 투입														
	지방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조1천337억원 투입														
정책 목표별 주요 추진성과	개방	□ 출입국 심사 서비스 고도화, 비자제도 개선 및 환승관광·의료관광 활성화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 외국인 관광객 수(2009년 6,448명에서 2016년 14,202명) □ 공익사업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국내 경기 활성화 도모 <연도별 투자 유치 실적>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13</th> <th>2014</th> <th>2015</th> <th>2016</th> </tr> </thead> <tbody> <tr> <td>부동산투자이민제</td> <td>453,154</td> <td>347,792</td> <td>106,000</td> <td>150,659</td> </tr> <tr> <td>공익사업투자이민제</td> <td>1,300</td> <td>20,470</td> <td>38,740</td> <td>23,985</td> </tr> </tbody> </table>	구분	2013	2014	2015	2016	부동산투자이민제	453,154	347,792	106,000	150,659	공익사업투자이민제	1,300	20,470	38,740
	구분	2013	2014	2015	2016											
	부동산투자이민제	453,154	347,792	106,000	150,659											
공익사업투자이민제	1,300	20,470	38,740	23,985												
통합	□ 외국인 유학 활성화 및 우수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연계등 유차·활용 기반 구축 - 국제장학프로그램 시행, 일·학습연계비자 도입,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등 □ 이민자의 입국 초기 사회 적응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수(2009년 1,435명에서 2016년 60,358명)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수준별 단계별로 체계화 및 참여 촉진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2009년 1,331명에서 2016년 30,515명) □ 국제결혼 관련 법·제도 정비 - 국제결혼 비자심사기준 강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체류관리 강화 등 □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등 □ 이민배경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공교육 진입강화, 진로·직업교육 지원 □ 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정책결정 과정 참여, 자조모임 형성 지원 등 -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 촉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등															
	인권	□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 교육·의료·범죄피해 관련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 인도적 의료 서비스 제공 ▣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상담, 쉼터 제공, 법률 지원 ▣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 ▣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종합·체계적 지원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유기적 밀입국 방지 대책, 출입국 심사 강화 등 국경 안전 제고 ▣ 이민특수조사대 및 광역 단속팀 운영 등 불법체류 발생 억제 ▣ 체류외국인 법질서 확립 추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이주기구(IOM) 등 다자협약체 및 각 국 이민당국과 협력 ▣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등 체계적 난민심사 시스템 구축 ▣ 외국국적 동포의 자유왕래 및 경제활동 보장 확대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수(2009년 430명에서 2016년 776명) 				
	한계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외국인재 유치 미흡 및 단순 기능인력의 장기 거주 ▣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 결혼이민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 이외의 재한외국인 자원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 체계 부족 ▣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비 부족 ▣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및 중앙-지방체-민간 협력 부족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pp. 9-17.

4)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 2022)

(1) 비전 및 정책목표

2018년 2월 수립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핵심가치 즉,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을 토대로 5개의 정책목표와 18개의 중점과제를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개의 정책목표는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이하 개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이하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이하 안전)’,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이하 인권)’, 그리고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이하 협력)’로 설정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은 과거 10년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수인재 유치 및 경

제활동 주체 확보, 저출생·고령화 대응, 상생과 화합의 사회통합 구현,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순환적 이민환경 조성에 핵심을 두고 있다.

[표 2-16] 제3차 기본계획의 차별성

구분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이민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의 양적 확대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병행한 적극적 이민정책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 체계 마련 및 참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영주·국적 연계 강화
인재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유학생 및 외국 인재 유입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입→자립→성장→기여]의 미래 지향적 정책 추진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적·선언적 인권 옹호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및 인프라 확충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 실태 파악 및 인권증진 정책 마련
기관 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관련 위원회간 협력 부족 자치체 및 시민단체의 외국인 정책 참여 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관련 위원회간 연계 강화 자치체와 협의회 구성, 컨설팅 제공 등 협력체계 구축 정책수요자 참여형 외국인정책 추진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관련 통계, 연구기반 부족 이민관련 체계적 법제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기록정보원 등 기반 확충 이민관련 법제 고도화 추진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pp. 23-26.

구체적으로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과거에 비해 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비롯한 자발적 적응을 독려하는 과제가 추가되었고, 그들의 인권보호와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적 관심 또한 높아졌으며, 국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새로이 추가하면서 친(親)이민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제3차 기본계획이 갖는 차별성을 과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먼저, 이민 개방 부분에서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고, 사회통합의 체계구축과 체류에서부터 영주 또는 국적 취득의 연계를 강화하며, 이미 우수한 인재를 유치

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자립 및 성장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기존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인권 옹호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아동 등 취약외국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며, 유사 위원회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 구성 등 기관 간 협력 강화 등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들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다.

[표 2-17]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및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비 전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
정 책 목 표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중 점 과 제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1-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1-4. 유입 체계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2-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2-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3-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3-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4-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4-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5-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5-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5-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p. 23.

(2) 세부 추진과제

5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는 각각 46개, 16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과제를 시행하는 소관 부처는 법무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19개 중앙행정기관이다.

정책목표 중 가장 많은 세부과제가 추진되는 것은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이며,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또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정책목표별 세부 추진과제 현황

정책목표	중점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3	12	5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2	5	2
	1-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3	13	6
	1-4. 유입 체계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3	10	2
	소계평균	11	40	3.8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4	23	5
	2-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2	5	3
	2-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2	5	4
	2-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2	6	2
	소계평균	10	39	3.5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3-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3	10	4
	3-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2	9	2
	소계평균	5	19	3.0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3	12	4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3	10	7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2	8	3
	4-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2	7	2
	4-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3	6	2
	소계평균	13	43	3.6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5-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2	6	3
	5-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3	10	2
	5-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2	9	3
	소계평균	7	25	2.7
합계 평균		46	166	3.4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pp. 76-92.

(3) 예산 규모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행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 투입 예산 규모는 1조 1천 413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1조 851억원(95.0%)이고, 지방비는 561억원(5.0%)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335억원을 시작으로 하여, 2019년 2,319억원, 2020년 2,261억원, 2021년 2,285억원,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 2-19] 연도별 투입 예산 규모 추계

(단위: 억 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1,413.14	2,335.54	2,317.34	2,261.01	2,285.64	1,031.94	
국비	일반회계	6,631.07	1,482.06	1,395.48	1,281.77	1,290.09	1,181.67
	특별회계	89.03	31.00	10.00	28.03	10.00	10.00
	기 금	4,131.47	698.52	802.48	841.83	876.14	912.50
	소 계	10,851.57	2,211.58	2,207.96	2,151.63	2,176.23	922.50
지방비	561.57	123.96	109.38	109.38	109.41	109.44	

〈출처〉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p. 94.

한편, 연도별 투입 예산을 정책목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이 총 8,113억원(71.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구현에 1,117억원(9.8%),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가 1,032억원(9.0%) 등의 순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표 2-20] 정책목표별·연도별 투입 예산 규모 추계

(단위: 억 원, %)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1,413.14 (100.0)	2,335.54 (100.0)	2,317.34 (100.0)	2,261.01 (100.0)	2,285.64 (100.0)	2,213.61 (100.0)	
정책 목표	개방	8,113.07 (71.1)	1,645.77 (70.5)	1,584.57 (68.4)	1,590.31 (70.3)	1,629.11 (71.3)	1,663.31 (75.1)
	통합	1,117.15 (9.8)	196.33 (8.4)	255.37 (11.0)	214.75 (9.5)	221.32 (9.7)	229.39 (10.4)
	안전	1,032.80 (9.0)	177.50 (7.6)	325.20 (14.0)	277.10 (12.3)	111.00 (4.9)	142.00 (6.4)
	인권	636.11 (5.6)	113.88 (4.9)	121.25 (5.2)	129.70 (5.7)	130.31 (5.7)	140.97 (6.4)
	협력	514.00 (4.5)	202.06 (8.7)	30.95 (1.3)	49.15 (2.2)	193.90 (8.5)	37.94 (1.7)

〈출처〉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 p. 94.

2. 다문화가족정책 경향분석

1)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주관의 다문화정책은 특정의 소수자 집단이 무시되거나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차이에 근거한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며,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정책은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그들의 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5년을 기준으로 수립되며, 2010년 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2013년 2차 기본계획, 2018년 3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필두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가족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12개 중앙행정기관과 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

진실적 및 평가, 각종 조사 및 연구, 각종 사업의 조정 및 협력, 국가 간 협력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 2-21]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구분	주요 내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
정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3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중(2018 ~ 2022년)
전담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법」 제3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국무총리 - 위원: 여성가족부장관,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12개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전문가

〈자료〉 전성훈·오은지,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고양시정연구원」, 2019. p.111

2) 추진경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에 따른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2010년 5월 제2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채택되었다. 다만, 국가 주도의 기본계획이 일반적으로 5년임을 고려하면,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적용 기간은 2년으로, 이는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함께 연동해야 한다는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2012년 12월에 수립되었으며, 2017년까지 수행되어 왔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적용될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2017년 5월 연구용역의 발주를 시작으로 하여, 동년 10월 관계부처 의견수렴, 11월

공청회와 정책 수요자인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2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2-2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경과

연월	주요 내용
2008.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 제정 -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규정
200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출범
201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확정 -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0 ~ 2012)
201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201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TF팀 구성·운영(7회) 및 전문가 조사 실시
20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 확정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3 ~ 2017)
2017.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추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분야별 의제발굴을 위한 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회의(총 7회)
201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1, 2차 의견수렴
20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및 지자체, 현장, 정책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을 위한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201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 개최
201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확정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8 ~ 2022)

〈자료〉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8, p. 1.

3) 역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성과

(1)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성과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개의 정책목표와 5개의 추진과제, 20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포함한 20개의 세부과제가 추진되었다.

[표 2-23] 제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의 비전 및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비 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정 책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추진과제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자료〉 여성가족부, 『제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 p. 7.

한편,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된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한 과제 수는 2011년 388개에서 2012년 534개

로 대폭 증가되는 추이를 보였고,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총 1,81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에 40.0%가 지원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년간 총 1,463억 원이 지출되었다.

정책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성과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등 다문화가족정책 기반 확대,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 등 지원 강화, 그리고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꼽을 수 있으나, 한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인해 제고 미흡,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 부족, 역차별 및 외국인 혐오증 등에 대한 인식 야기 등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표 2-24]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구 분		2011	2012												
과제 수(개)	중앙	61	53												
	지방	327	481												
	합계	388	534												
투입 예산 (억 원, %)	중앙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15억원 투입 □ 정책분야별 예산비율													
		<table border="1"> <tr> <td>정책 추진 체계 정비</td> <td>국제결혼 중개관리 등</td> <td>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td> <td>자녀의 성장환경 조성</td> <td>사회적 이해 제고</td> </tr> <tr> <td>20.0%</td> <td>2.0%</td> <td>40.0%</td> <td>31.0%</td> <td>7.0%</td> </tr> </table>	정책 추진 체계 정비	국제결혼 중개관리 등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자녀의 성장환경 조성	사회적 이해 제고	20.0%	2.0%	40.0%	31.0%	7.0%			
		정책 추진 체계 정비	국제결혼 중개관리 등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	자녀의 성장환경 조성	사회적 이해 제고									
20.0%	2.0%	40.0%	31.0%	7.0%											
	지방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463억원 투입													
정책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추진체계 정비	□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체계 구축 - 「다문화가족법」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 및 전담부서 설치 등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정책 기반 확대 - 제2차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및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의 기초자료 구축													
	국제결혼	□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하여 법령·제도 개선과 함께 베트남 등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구 분		2011	2012
	중개 관리	<p>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강화, 만 18세 미만 소개 금지 등 제도 개선 - 결혼이민자 대상 입국 전 사전교육 실시(3개국) 및 특정국가(7개국)의 한국인 배우자 대상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 제고 - 주한대사 협의체 구성, 베트남-필리핀 등과 정부간 양해각서 체결 등 주요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통번역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지원 확대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지역센터 확대, 다누리 콜센터 개설 등으로 서비스 수혜자 확대 - 결혼이민자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일배움카드제, 고용서비스 인턴 등 각종 일자리 사업에 결혼이민자 우대 -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대상 기초생활보장 지원, 긴급의료서비스 제공 	
	자녀의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등 지원 강화 -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및 엄마(이씨)나라 언어 습득을 위한 '언어영재 교실' 운영 - 글로벌 선도학교 지정,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으로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 지원 	
	사회적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 추진 - 다문화시설 종사자, 공무원, 교원, 경찰, 군인 등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 생활체육교실, 캠프 및 우수 다문화 작품 지역 순회 공연 실시 - 지상파케이블 TV,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광고 확대를 통하여 다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확산 	
	한계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의 문화 등에 대한 이해제고는 미흡 ▣ 취학자녀 지원 등은 다소 부족한 상황 ▣ 가족하체 등에 대한 예방정책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에는 관심 소홀 ▣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 지원 요구에는 대응 부족 ▣ 역사·별 논란, 외국인혐오증(제노포비아) 등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야기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다문화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및 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 pp. 7-12.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성과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6개의 정책목표와 23개의 중점과제가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책목표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그리고 ‘정책추진체계 정비’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포함한 23개 과제가 추진되었다.

【표 2-25】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비전 및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비 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정 책 목 표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추 진 과 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1-1.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태도 제고 1-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지지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2-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2. 한국어능력 향상 2-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2-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3-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3-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3-3. 소외계층 지원 강화 3-4. 피해자 보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4-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4-2. 직업교육훈련 지원 4-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4-4.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5-1.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5-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5-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구 분	주요 내용
정책추진체계 정비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6-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6-3.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출처〉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 p. 30.

다음으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행된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개정과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였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 등록제 시행과 사기결혼 피해 예방 등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자녀 지원 등을 토대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색개선 캠페인, 다문화가족포럼 등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표 2-26]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성과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성과	<p>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정책의 법적근거 마련 ▣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종합적·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기초 통계자료 구축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총괄,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조정 등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p>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제 도입, 사기결혼 피해 예방 등 관리 강화 ▣ 결혼상대국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공조수사 및 불법소지 업체 단속 강화 등으로 국제결혼 피해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담건수(소비자원) : ('14) 603건 → ('16) 376건
	<p>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상담, 가족통합교육 등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지속기간 ('12) 8.8년 → ('15) 9.8년

구 분		주요 내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취업지원, 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고용률 : ('12) 47.4% → ('16) 52.3% - 월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 ('12) 26.0% → ('15) 37.8%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지원을 통해 취학을 향상, 학업중단을 감소 등 학교생활 적응도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항상(초등 98%, 중등 94%, 고등 90%)되고 있으며, 차별을 경험한 비율도 감소('12년 14% → '15년 9%)
	다문화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12년 51.17점에서 '15년 53.95점으로 소폭 상승 ▣ 학계·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포럼을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 ~ '16년 다문화가족포럼 8회, 학술대회 6회 개최
	한계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적응 중심의 정책에서 정기정착화에 따른 정책으로 재편 필요 ▣ 중장기 관점에서 다문화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시행 필요

〈자료〉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8, pp. 2-4.

4)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 ~ 2022)

(1) 비전 및 정책목표

2018년 수립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의 정책목표와 17개의 정책과제를 채택하여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목표는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 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등 17개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27]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및 목표

구 분	주요 내용		
비 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정 책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추 진 과 제	다문화가족 장기정책 지원	1-1.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2.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1-3.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1-4. 서비스 연계 활성화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2-1. 자립역량 강화 2-2.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2-3.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3-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3-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3-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3-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4-1.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4-2.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4-3.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4-4.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5-1.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5-2.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출처〉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8, p. 10.

(2) 세부 추진과제

5개의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는 각각 17개, 7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과제를 시행하는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18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책과제 중 가장 많은 세부과제가 추진되는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이며, 참여하는 중앙부처가 가장 많은 과제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로 나타났다.

[표 2-28]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현황

정책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소관부처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1-1.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4	2
	1-2.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4	2
	1-3.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6	6
	1-4. 서비스 연계 활성화	2	2
	소계평균	16	3.0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2-1. 자립역량 강화	5	4
	2-2.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6	6
	2-3. 사회참여 기회 확대	4	4
	소계평균	15	4.7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3-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5	2
	3-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4	3
	3-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4	5
	3-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6	3
	소계평균	19	3.3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4-1.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2	1
	4-2.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5	9
	4-3.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4	3
	4-4.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3	4
	소계평균	14	4.3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명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5-1.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4	4
	5-2.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2	1
	소계평균	6	2.5
합계 평균		70	3.6

〈자료〉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8, pp. 27-32.

(3) 예산 규모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2019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총 4,688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 중 중앙정부가 3,892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795억 원이 지출되었다.

정책과제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경우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이 2,9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가 22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표 2-29] 정책과제별 투입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과제 번호	세부과제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합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2019년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1,538	2,946	200	205	3,151
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726	389	148	141	530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664	416	190	226	642
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148	66	84	89	156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37	31	97	133	164
합계		3,115	3,892	721	795	4,688
대책 과제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지원	-	42	-	-	42

<출처>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p. 9.

제4절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행정수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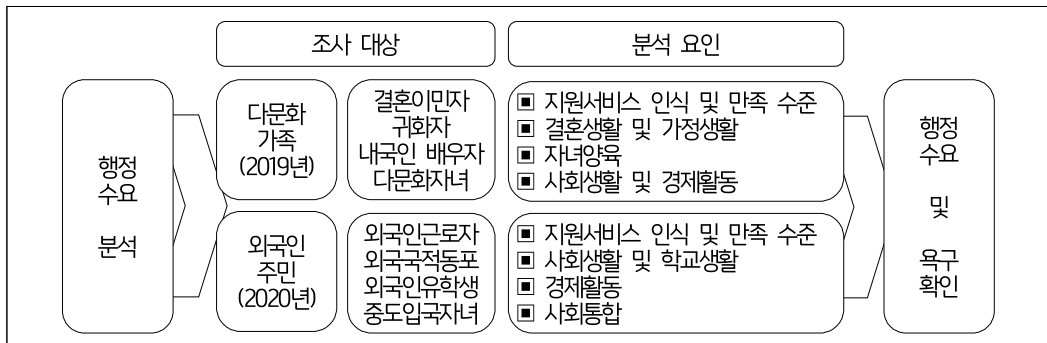
1. 행정수요 분석 체계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행정수요 분석은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한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2019)’와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2020)’를 통해서 확인된 설문 및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고자 한다.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하였던 두 연구는 모두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으며, 전자 연구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후자 연구는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유학생, 그리고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연구대상에 따라 설문분야 및 문항을 공통질문과 특성질문으로 차별화하여 적용하였고, 현행 지원서비스, 사회생활, 결혼생활, 자녀양육, 경제활동, 사회통합 분야 등으로 구체화를 시도하였다.

[그림 2-2] 행정수요 분석체계



2. 실증조사 구조체계

1) 다문화가족

(1) 분석의 목적

본 실증조사의 목적은 고양시 다문화가족 구성원(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실태 및 욕구분석을 통해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실태 및 욕구조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통해 기존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자녀양육,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인식 수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2-30] 다문화가족 실증조사 체계

구분		주요 내용
조사목적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수준, 생활실태, 욕구수요 등 확인
	심층면접	
조사시기	설문조사	▣ 2019년 8 ~ 9월
	심층면접	▣ 2019년 9 ~ 10월
조사방법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조 -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를 국가별(5개국)로 조사원 채용(5명)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조 - 지역별·국가별로 안배하여 선정하되 입국시기와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6가구)
작성방법	설문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의 자기기입방식 또는 면접식 적용
	심층면접	▣ 개별면접법 또는 집중집단면접법 적용
조사대상	설문조사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
	심층면접	▣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료> 전성훈·오은지,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고양시정연구원, 2019. p180.

(2) 분석의 방법

고양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실태 및 욕구분석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 바, 첫 번째 단계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을 통한 설문조사이며, 두 번째 단계는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심층면접(FGI)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방식을 적용하되 조사결과와 타당성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은 5개국(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를 조사원으로 채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FGI) 대상자는 지역별·국가별로 안배하여 선정하되, 다문화가족 구성시기와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였다.

2) 외국인주민

(1) 분석의 목적

본 실증조사의 목적은 고양시 외국인주민(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을 통해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주요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통해 기존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만족 수준, 사회생활 또는 학교생활, 경제활동, 사회통합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인식 수준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현행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정책 한계점을 도출하고, 향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와 정책적 방향, 그리고 세부사업 개발에 요구되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2-31] 외국인주민 실증조사 체계

구분		주요 내용
조사목적	설문조사	▣ 고양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수준, 생활실태, 욕구수요 등 확인
	심층면접	
조사시기	설문조사	▣ 2020년 5 ~ 6월
	심층면접	▣ 2020년 6 ~ 7월
조사방법	설문조사	▣ 법무부 지정 고양이민자통합센터 협조 -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을 국가별로 조사원으로 채용
	심층면접	▣ 법무부 지정 고양이민자통합센터 협조 - 지역별·국가별로 안배하여 선정하되, 입국시기와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30명)
작성방법	설문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의 자기기입방식 또는 면접식 적용
	심층면접	▣ 개별면접법 또는 집중집단면접법 적용
조사대상	설문조사	▣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유학생, 중도입국자녀
	심층면접	▣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유학생, 중도입국자녀

〈자료〉 전성훈·오은지,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고양시정연구원, 2020. p252.

(2) 분석의 방법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활용하였다.

첫 번째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자기기입방식을 활용한 설문조사이며, 두 번째는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한 심층면접(FGI)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면대면(face to face)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무부 지정 고양이민자통합센터의 협조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와 출입국관리사무소(고양출장소) 방문자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심층면접(FGI)은 지역별·국가별로 안배하여 선정하되, 고양시 체류시기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양이민자통합센터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였다.

3. 행정수요 분석 결과 요약

1) 다문화가족

(1) 설문조사 분석 요약

고양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내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서비스’ 요인에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서비스별 이해 빈도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정보의 수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되고, 취업교육 및 알선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고양시 관내 공공기관 및 시설의 이용 경험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가 낮은 수준으로 정보의 빈약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며, 개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높다고 인식하나, 만족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내용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결혼생활 및 가정생활’ 요인에서 다문화가족 부부는 서로 문화적 차이점을 느끼지는 않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편이며, 성격차이 등을 주된 이유로 다투는 편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기타 동거 중인 가족에 대한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가정 내에서 어느 정도 결정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나,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생활을 원만히 영위 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녀양육’ 요인에서 부부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자녀와의 관계 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자녀 돌봄에 있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대응하나, 5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체력적·경제적 어려움이 많고, 6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는 학업, 진로 등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사회생활’ 요인에서는 한국어 실력이 그리 높지 않아 한국생활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과 언어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나, 한국어 능력시험을 응시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와 모임 등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지 않아 거주지 중심의 지역공동체에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동화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경제활동’ 요인에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취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너무 긴 노동시간, 낮은 보수수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 인접한 일자리를 필요로 하나, 구직활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사항’ 요인에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들은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하는데 일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소 우울증세로 인한 고통이 있으나, 현재 고양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아 지속적인 거주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부 관대한 모습을 보이나, 본인들은 관심이 없으며, 현재 고양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수준은 높은 편이나, 소수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심층면접(FGI) 결과 요약

먼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와 내국인 배우자 간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어 구사의 부족으로 상호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그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초기적응에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둘째, 이민국의 주류문화에 순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본국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회활동 및 커뮤니티 참여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국적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만족스러운 한국생활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고용환경의 불안정성과 내국인과의 차별, 본국에서의 경력 및 지식수준 등을 고려치 않는 노동환경 등의 문제들로 인해 단순 노무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넷째, 자녀양육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다문화 자녀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데 한계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잊지 않고 향유하면서 이민국인 한국의 주류문화에 통합되기 위한 다양한 통로와 기회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2) 외국인주민

(1) 설문조사 분석 요약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유학생, 중도입국 자녀 등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서비스의 인식 및 만족도 부문에서 외국인주민의 유형에 따라 지원서비스 존재 인식의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서비스의 수혜 여부와 직결됨을 고려하면, 해당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더불어 서비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여건 상 시간의 확보가 어렵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하는 등의 제한적 정보력, 언어의 상이함에 따른 의사소통의 곤란함 등의 사유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그들이 한국생활에서 실질적으

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에 대한 반영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생활 부문에서 개별 외국인주민들 마다 한국어 활용 수준의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한국어 구사능력의 부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적 차원에서 개선의 노력 정도는 매우 미흡하고 일부 지역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지만, 한국생활을 비롯한 고양시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이긴 하나 과중한 정주비용과 이직 등을 사유로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활동은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제활동 및 구직희망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과 모국인 친구를 통해 주된 구직활동을 하며 주요 종사업종은 생산직, 판매직, 단순노무직 등으로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장생활과 구직활동 중에 낮은 한국어 수준과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시간, 외국인에 대한 차별, 다양한 일자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부문에서 외국인유학생을 제외하고 여타 외국인주민들은 영주권 취득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수용과 지역사회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주민의 온연한 정착을 위해서는 고양시 차원에서 포괄적 행·재정 지원의 강화와 지역주민들의 편견 및 차별 개선, 각종 생활정보 제공, 전문기술 습득 기회 제공,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2) 심층면접(FGI) 결과 요약

먼저, 생활실태와 관련하여 한국 방문 및 거주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경제활동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의 경우 다양한 장학금 수혜 기회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여전히 팽배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경험 또한 고충이라는 응답이 다수 있었다.

둘째, 경제활동 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인건비에서 한국인과 차별받은 경험을 꼽았고, 한국어 미흡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임금산정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도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인주민의 경우 구직활동 및 퇴직 등에 있어서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야 하므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사회통합 부문에서 외국인주민을 둘러싼 지역 내 사회 자본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여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거주지 주변 이웃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도움이나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모든 유형의 외국인주민들이 고양시 관내 공공시설인 시청 및 구청,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국적 및 영주권 취득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외국국적동포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초기 적응 이후 본국의 가족이 추가적으로 이주한 사례가 많아, 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유학생의 경우에도 졸업 이후 한국에서 취업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로서 지역 내 커뮤니티센터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비공식적 자조모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차별적 근로환경 및 비자 문제 등으로 인한 법률적 상담과 한국사회에의 초기정착 및 지지를 위한 심리상담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 3 장

제1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제1절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핵심가치

제2절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

제3절 제1차 기본계획의 구조체계

제1차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핵심가치

1. 비전

고양시의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비전 또는 청사진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양시의 민선 7기 시정목표와 미래상 등을 선행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양시정의 슬로건은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이며, 그에 따른 시정목표는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특별시’,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중심도시’,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도시’, 그리고 ‘조화와 균형의 지속가능발전도시’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3-1] 고양시정 슬로건 및 시정목표



그리고 민선 7기 고양시의 미래상은 크게 10가지로 채택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한반도-동북아 허브도시(Vision 1)’, ‘남북경제 중심도시(Vision 2)’, ‘대한민국 평화도시(Vision 3)’, ‘누구나 일하는 공유경제도시(Vision 4)’,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치도시(Vision 5)’,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도시(Vision 6)’, ‘안전하고 건강한 행

정북지도시(Vision 7)’, ‘여유롭고 배움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Vision 8)’, ‘빠르고 깨끗한 쾌적도시(Vision 9)’, 그리고 ‘상생과 공존의 지속가능도시(Vision 10)’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목표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비전은 언급한 4가지의 시정목표 중 ‘시민행복도시’, 10가지의 미래상 중 ‘안전하고 건강한 행정복지도시(Vision 7)’와 그 맥을 함께 하며, 공약사업과 함께 체계적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3-1] 고양시 민선 7기 미래상(VISION)

<p>한반도-동북아 허브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안하이웨이 구축, 대륙횡단 탐승역 설치, 철도교통망 확대, 대륙역세권 개발을 통해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허브도시로 반드시 거쳐 가야할 관문 도시 	<p>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과 만족 수준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과 관행을 과감히 탈피한 새로운 혁신 행정을 통해 시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행정도시
<p>남북경제 중심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북부와 연계한 평화통일경제특구 유치를 통해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고 남북경제교류 관련 기업유치, 항공우주(드론) R&D센터 설립, 드론밸리 육성 등으로 고양시만의 특화사업을 바탕으로 남북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 	<p>안전하고 건강한 행정복지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행정혁신으로 모든 세대와 계층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p>대한민국 평화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맞아 남북관계 발전을 선도하고 남북한 공연 및 체육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 평화시대의 문화거점도시이자 평화의 한반도 시대의 전략적 요충지 	<p>여유롭고 배움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마을 교육지원체계와 연령별 맞춤 교육정책을 통해 배움이 넘치는 교육도시이자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이 직접 행하고 체감하고 익히는 문화도시
<p>누구나 일하는 공유경제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권 활성화와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화폐(고양페이)를 도입하고 영세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도시 	<p>빠르고 깨끗한 쾌적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기후협약의 이행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도시이자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통팔달의 교통혁신 도시
<p>시민과 함께 만드는 자치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일차적 편의를 위한 신속서비스나 여가활동 지원을 넘어 고양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시키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치도시 	<p>상생과 공존의 지속가능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위적인 개발을 통한 도시계획을 뛰어넘어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바탕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도시 및 산업을 개발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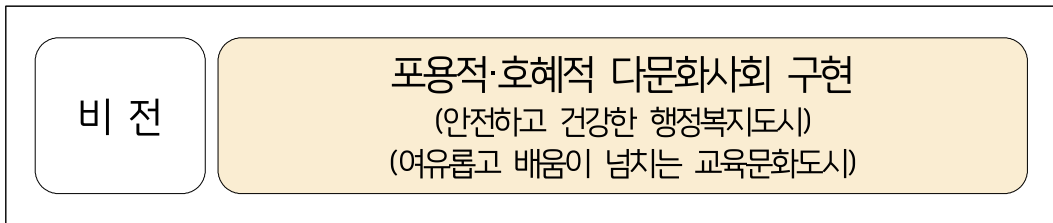
한편, 언급한 민선 7기 고양시정 목표와 미래상, 그리고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제3차)’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제3차)’ 등을 고려한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비전은 ‘포용적·호혜적 다문화사회 구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포용(Inclusive)’은 평등을 기반으로 서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상태를 ‘호혜(Reciprocity)’는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서로 편의와 이익을 주고받는 상태를 의

미하며,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는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문화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또는 사회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사회를 칭한다.

종합하면, ‘포용적·호혜적 다문화사회 구현’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고양시라는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외국인주민과 고양시민 간 상호 편익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양식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함축한다.

[그림 3-2]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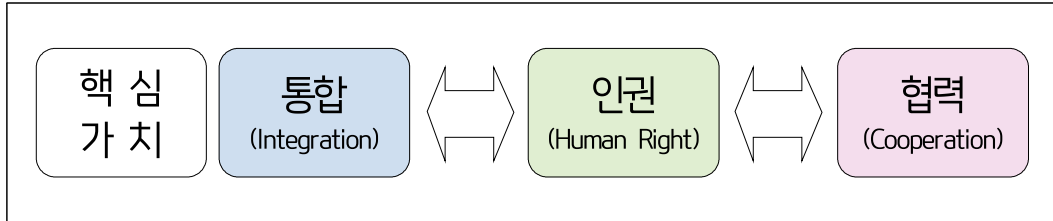


2. 핵심 가치

제1차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는 ‘통합(Integration)’과 ‘인권(Human Right)’, 그리고 ‘협력(Cooperation)’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통합(Integration)’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나 집단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인권(Human Right)’은 평등과 다양성의 존중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협력(Cooperation)’은 포용적이고 호혜적인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양시와 의회, 유관기관을 비롯한 외국인주민과 고양시민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3]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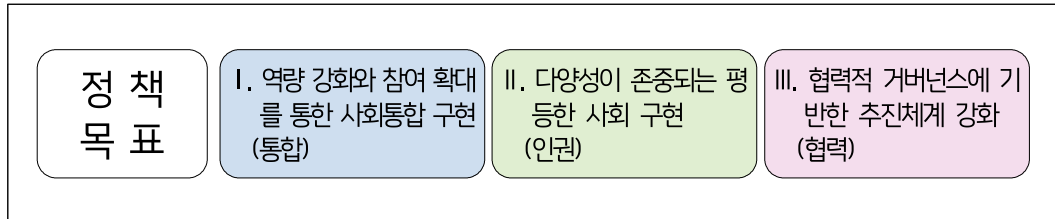
제2절 제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

1. 정책목표

앞서 살펴본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토대로 정책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통합(Integration)’의 가치를 적용하여 ‘역량 강화와 참여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Ⅰ)’을 첫 번째 정책목표로 채택하고, ‘인권(Human Right)’의 가치를 반영한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Ⅱ)’을 두 번째 정책목표로 설정하며, ‘협력(Cooperation)’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Ⅲ)’를 마지막 세 번째 정책목표로 설정한다.

[그림 3-4]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목표



2. 전략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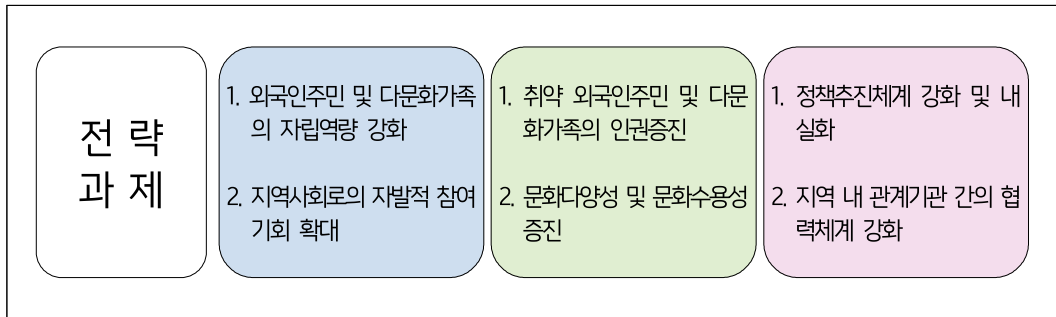
제1차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정책목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와 ‘지역사회로의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를 전략과제로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는 '취약 외국
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과 '문화다양성 및 문화수용성 증진'을 설정하였으
며, 마지막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
로는 '정책추진체계 강화 및 내실화', '지역 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채택
하였다.

[그림 3-5]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전략과제



제3절 제차 기본계획의 구조체계

지금까지 살펴본, 비전과 핵심가치, 정책목표 및 그에 따른 전략과제를 통해 제1차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구조체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3-6]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구조체계



제 4 장

제1차 기본계획의 전략과제별 세부과제

제1절 정책목표 Ⅰ

제2절 정책목표 Ⅱ

제3절 정책목표 Ⅲ

제4절 연도별 추진계획

제절 정책목표 I

1. 구조체계

정책목표 I 인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과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와 “I-2. 지역사회로의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이며, 이들 과제를 구체화한 세부과제는 ‘I-1-1.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총 22개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략과제 I-1”은 총 1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외국인주민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언어, 학습, 정서, 취업 등의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총 16개 세부과제 중 15개 사업은 기존에 수행 중인 지속사업으로 국비 또는 도비의 지원이 일부 존재하는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는 ‘I-1-15. 외국인주민 맞춤형 취업 지원’과 ‘I-1-16. 거점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 통역안내원 배치’ 등을 채택하여 기존 결혼이민자 중심의 정책지원 편중 현상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전략과제 I-2”는 기존사업 3개와 신규사업 2개로 구성되며, 그동안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주민들 간의 교류활동 중심의 정책지원에서 그들 스스로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참여하여 공동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추가로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주민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지역현안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지역봉사단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림 4-1] 정책목표 | 구조체계

정 책 목 표	<p>▣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통합)</p>
전 략 과 제	<p>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1-2. 지역사회로의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p>
세 부 과 제	<p>[기존] 1-1-1.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기존] 1-1-2. 한국어교육 운영 [기존] 1-1-3.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방문교육) [기존] 1-1-4.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언어발달) [기존] 1-1-5.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기존] 1-1-6.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기존] 1-1-7.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기존] 1-1-8.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 지원 [기존] 1-1-9.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기존] 1-1-10. 외국인주민 한국어말하기 대회 [기존] 1-1-11.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정서 지원 확대(농구단 운영) [기존] 1-1-12.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정서 지원 확대(아구단 운영) [기존] 1-1-13.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기존] 1-1-14. 결혼이민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취업지원 [기존] 1-1-15.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신규] 1-1-16. 외국인주민 맞춤형 취업 지원 [신규] 1-1-17. 거점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 통역안내원 배치</p> <p>[기존] 1-2-1.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기존] 1-2-2.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기존] 1-2-3.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신규] 1-2-4. 주민자치회 내 자발적 참여 기회 제공 [신규] 1-2-5. 지역봉사활동에 자발적 참여 기회 제공</p>

2. 세부과제

▣ 1-1-1.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핵심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사업	[1-1-1]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근거법령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사업개요	사업목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제공			
	사업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국인주민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여성가족과				
	협력사업		단독사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공모사업				

■ 1-1-2. 한국어교육 운영

핵심 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 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 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 사업	[1-1-2] 한국어교육 운영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2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 전문적인 한국어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조기적응 지원			
	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1-1-3.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방문교육)

핵심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사업	[1-1-3]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방문교육)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1-1-4.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언어발달)

핵심 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 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 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 사업	[1-1-4]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언어발달)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 다문화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로 인한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1-1-5.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핵심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사업	[1-1-5]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2조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 전문적 한국어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정착 지원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1-1-6.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핵심 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 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 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 사업	[1-1-6]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중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1-1-7.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핵심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사업	[1-1-7]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결혼이민자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반 가정 자녀와 동등한 기초 한국어 학력 수준 도모			
	사업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주)대교				

▣ 1-1-8.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 지원

핵심 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 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 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 사업	[1-1-8]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 지원				
근거 법령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배려와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보육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자녀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대상	▣ 외국인근로자자녀 전담어린이집: 최대2인까지 지원 /외국인근로자자녀 통합어린이집: 어린이집 당 1인 지원(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어린이집 1인당 월 1,800천원 지원)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1-1-9.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핵심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사업	[1-1-9]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근거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다문화가정자녀의 역사교육 지원을 통해 정서적 지원 및 학습능력 향상으로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도모			
	사업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1-1-10. 외국인주민 한국어말하기 대회

핵심 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 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 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 사업	[1-1-10] 외국인주민 한국어말하기 대회				
근거 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여를 통해 한국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한국문화 적응능력 향상에 도모			
	사업 대상	■ 외국인주민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여성가족과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공모사업				

▣ 1-1-11.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정서 지원 확대(농구단 운영)

핵심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사업	[1-1-11]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정서 지원 확대(농구단 운영)				
근거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농구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발판 마련			
	사업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유형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체육정책과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재)문화나눔재단					

▣ 1-1-12.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정서 지원 확대(아구단 운영)

핵심 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 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 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 사업	[1-1-12]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정서 지원 확대(아구단 운영)				
근거 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에게 차별없는 스포츠 참여기회 부여, 소속감 및 공동체의식 함양			
	사업 대상	▣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1-1-13.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핵심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사업	[1-1-13]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한국생활 적응 및 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진로코칭으로 자기정립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도모			
	사업대상	▣ 이주배경 청소년(9세~24세)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1-1-14. 결혼이민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취업지원

핵심 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 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 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 사업	[1-1-14] 결혼이민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취업지원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12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활동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 지역사회 다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			
	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1-1-15.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핵심 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 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 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 사업	[1-1-15]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2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의 적합 직종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및 일자리 연계로 결혼이민자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육성			
	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1-1-16. 외국인주민 맞춤형 취업 지원

핵심 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 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 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 사업	[1-1-16] 외국인주민 맞춤형 취업 지원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2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한국어 의사소통과 본국에서의 경력 및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교육 및 일자리 연계로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사업 대상	■ 외국인주민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1-17. 거점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 통역안내원 배치

핵심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과제	1-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세부사업	[1-1-17] 거점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 통역안내원 배치				
근거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고양시 관내 행정동 중 외국인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주민을 통역 안내원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연계와 정보제공을 통한 정착 지원			
	사업대상	□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주민 (덕양구: 관산동 또는 행주동, 일산동구: 고봉동, 일산서구: 일산2동 또는 송산동)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유형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여성가족과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일자리정책과					

■ 1-2-1.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핵심 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 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 과제	1-2. 지역사회로의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

세부 사업	[1-2-1]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에게 다문화정책 및 생활 편의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도모			
	사업 대상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외국인관련 단체 등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여성가족과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경기다문화뉴스				

▣ 1-2-2.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핵심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과제	1-2. 지역사회로의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

세부사업	[1-2-2]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이 주체적으로 다문화 공존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제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능동적, 자립적인 일원으로서 역량제고			
	사업대상	▣ 결혼이주여성(250명)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1-2-3.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핵심 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 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 과제	1-2. 지역사회로의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

세부 사업	[1-2-3]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의 정보 교류의 장인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여가활동, 문화생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1-2-4. 주민자치회 내 자발적 참여 기회 제공

핵심 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 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 과제	1-2. 지역사회로의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

세부 사업	[1-2-4] 주민자치회 내 자발적 참여 기회 제공				
근거 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7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외국인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 제고			
	사업 대상	▣ 외국인주민 (주민자치회 내 다문화분과 설치)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여성가족과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주민자치과					

▣ 1-2-5. 지역봉사활동에 자발적 참여 기회 제공

핵심 가치	통합 (Integration)
정책 목표	1.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
전략 과제	1-2. 지역사회로의 자발적 참여 기회 확대

세부 사업	[1-2-5] 지역봉사활동에 자발적 참여 기회 제공				
근거 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7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외국인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함양토록하기 위한 지역봉사단체와 연계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 구현			
	사업 대상	▣ 외국인주민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나눔봉사단)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제2절 정책목표 II

1. 구조체계

정책목표 II인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인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과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I-1. 취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과 “II-2. 문화다양성 및 문화수용성 증진”이며, 이들 과제를 구체화한 세부과제는 ‘II-1-1. 다문화가족 특화사업(통번역)’을 비롯한 총 13개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략과제 II-1”은 총 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외국인주민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번역, 사례관리, 상담지원, 생활안내책자 등의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총 7개 세부과제 중 5개 사업은 기존에 수행 중인 지속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는 ‘II-1-6.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책자 제작’과 ‘II-1-7. 거점별 다문화커뮤니티센터 확보’ 등을 채택하여 외국인주민을 비롯한 결혼이민자 등에 각종 유익한 정보제공과 교류공간 제공을 통해 온전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전략과제 II-2”는 기존사업 4개와 신규사업 2개로 구성되며, 그 동안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주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다문화교육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일반시민들까지 확대하는 세부과제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고양시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고,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며, 특히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문화수용성 증진 교육을 강화하여 그들 스스로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림 4-2] 정책목표 II 구조체계

<p>정 책 목 표</p>	<p>▣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인권)</p>
<p>전 략 과 제</p>	<p>II-1. 취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 II-2. 문화다양성 및 문화수용성 증진</p>
<p>세 부 과 제</p>	<p>[기존] II-1-1. 다문화가족 특화사업(통번역) [기존] II-1-2.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사례관리) [기존] II-1-3.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기존] II-1-4.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 운영 [기존] II-1-5.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신규] II-1-6.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책자 제작 [신규] II-1-7. 거점별 다문화커뮤니티센터 확보</p> <p>[기존] II-2-1.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기존] II-2-2. 다문화가족 캠프 [기존] II-2-3. 내·외국인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기존] II-2-4. 고양 다문화 어울마당 [신규] II-2-5. 한국문화수용성 증진교육(외국인주민) [신규] II-2-6. 문화다양성 증진교육(공무원 등)</p>

2. 세부과제

▣ II-1-1. 다문화가족 특화사업(통번역)

핵심가치	인권 (Human Right)
정책목표	II.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
전략과제	II-1. 취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

세부사업	[II-1-1] 다문화가족 특화사업(통번역)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1-2.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사려관리)

핵심 가치	인권 (Human Right)
정책 목표	II.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
전략 과제	II-1. 취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

세부 사업	[II-1-2]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사려관리)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 사려관리 지원 :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한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1-3.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핵심 가치	인권 (Human Right)
정책 목표	II.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
전략 과제	II-1. 취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

세부 사업	[II-1-3]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근거 법령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0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input type="checkbox"/> 한국사회에 익숙한 결혼이민자(서포터즈) 여성이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도모			
	사업 대상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input type="checkbox"/>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1-4.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 운영

핵심 가치	인권 (Human Right)
정책 목표	II.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
전략 과제	II-1. 취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

세부 사업	[II-1-4]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 운영				
근거 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2항 및 제16조2항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돕는 상담활동을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 확립과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 구성원(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등)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1-5.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핵심 가치	인권 (Human Right)
정책 목표	II.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
전략 과제	II-1. 취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

세부 사업	[II-1-5]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근거 법령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국인주민의 노무법률상담, 가족갈등관련 상담 등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및 안정적 국내생활 적응지원			
	사업 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국인주민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여성가족과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공모사업				

▣ II-1-6.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책자 제작

핵심 가치	인권 (Human Right)
정책 목표	II.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
전략 과제	II-1. 취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

세부 사업	[II-1-6]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책자 제작				
근거 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정보(체류 및 등록, 주요기관 서비스 등)가 수록된 생활 안내 책자 제작으로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제고			
	사업 대상	▣ 외국인주민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1-7. 거점별 다문화커뮤니티센터 확보

핵심가치	인권 (Human Right)
정책목표	II.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
전략과제	II-1. 취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

세부사업	[II-1-7] 거점별 다문화커뮤니티센터 확보				
근거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외국인주민들 상호 간, 외국인주민과 내국인 간의 원활하고, 활성화된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제고			
	사업대상	▣ 외국인주민 및 고양시민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유형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여성가족과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주민자치과					

▣ II-2-1.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일반시민)

핵심 가치	인권 (Human Right)
정책 목표	II.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
전략 과제	II-2. 문화다양성 및 문화수용성 증진

세부 사업	[II-2-1]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일반시민)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통해서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고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여 외국인주민과의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			
	사업 대상	▣ 내·외국인(유아, 학생, 일반인 등)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2-2. 다문화가족 캠프

핵심 가치	인권 (Human Right)
정책 목표	II.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
전략 과제	II-2. 문화다양성 및 문화수용성 증진

세부 사업	[II-2-2] 다문화가족 캠프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다문화가정의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2-3. 내·외국인이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핵심 가치	인권 (Human Right)
정책 목표	II.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
전략 과제	II-2. 문화다양성 및 문화수용성 증진

세부 사업	[II-2-3] 내·외국인이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근거 법령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7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내·외국인이 교류하는 글로벌 북카페와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외국주민 복지를 위한 문화 공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사업 대상	▣ 외국인주민 및 고양시민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2-4. 고양 다문화 어울마당

핵심 가치	인권 (Human Right)
정책 목표	II.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
전략 과제	II-2. 문화다양성 및 문화수용성 증진

세부 사업	[II-2-4] 고양 다문화 어울마당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외국인이 서로 함께 문화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계기 마련			
	사업 대상	▣ 외국인, 다문화가정, 일반시민, 다문화관련단체, 자원봉사자 등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2-5. 한국문화수용성 증진교육

핵심 가치	인권 (Human Right)
정책 목표	II.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
전략 과제	II-2. 문화다양성 및 문화수용성 증진

세부 사업	[II-2-5] 한국문화수용성 증진교육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역사 등에 대한 단계별 교육커리큘럼을 개발·제공하여 한국문화의 이해도와 수용도 제고			
	사업 대상	▣ 외국인주민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여성가족과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양시문화재단, 평생교육과, 문화유산관광과					

▣ II-2-6. 문화다양성 증진교육(공무원 등)

핵심 가치	인권 (Human Right)
정책 목표	II.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
전략 과제	II-2. 문화다양성 및 문화수용성 증진

세부 사업	[II-2-6] 문화다양성 증진교육(공무원 등)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고양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부문 문화수용성 제고			
	사업 대상	▣ 고양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행정지원과				

제3절 정책목표 Ⅲ

1. 구조체계

정책목표 Ⅲ인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과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Ⅲ-1. 정책추진체계강화 및 내실화”와 “Ⅲ-2. 지역 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이며, 이들 과제를 구체화한 세부과제는 ‘Ⅲ-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비롯한 총 11개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략과제 Ⅲ-1”은 총 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고양시로부터 위탁지정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및 종사자 처우 지원, 기능강화, 정보 획득 및 관리, 평가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총 8개 세부과제 중 4개 사업은 기존에 수행 중인 지속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는 ‘Ⅲ-1-6. 외국인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기능 분리·강화’, ‘Ⅲ-1-7. 상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Ⅲ-1-8. 외국인주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확보’, 그리고 ‘Ⅲ-1-9.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을 채택하여 정책추진체계와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공급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수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전략과제 Ⅲ-2”는 기존사업 1개와 신규사업 2개로 구성되며,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현실 적합성과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개발·심의하도록 하고,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책수혜자 중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림 4-3] 정책목표 III 구조체계

정 책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협력)
전 략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II-1. 정책추진체계강화 및 내실화 III-2. 지역 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
세 부 과 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III-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기존] III-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기존] III-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기존] III-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수당 [신규] III-1-5. 외국인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기능 분리강화 [신규] III-1-6. 상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신규] III-1-7. 외국인주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확보 [신규] III-1-8. 성과평가체계 구축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III-2-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신규] III-2-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내실화 [신규] III-2-3. 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div>

2. 세부과제

▣ III-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핵심가치	협력 (Cooperation)
정책목표	III.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
전략과제	III-1. 정책추진체계 강화 및 내실화

세부사업	[III-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적응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 가족자녀교육, 취·창업 교육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I-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핵심가치	협력 (Cooperation)
정책목표	III.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
전략과제	III-1. 정책추진체계 강화 및 내실화

세부사업	[III-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근거법령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input type="checkbox"/> 미흡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센터 종사자들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도모			
	사업대상	<input type="checkbox"/>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input type="checkbox"/>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여성가족과				
추진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input type="checkbox"/>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I-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핵심 가치	협력 (Cooperation)
정책 목표	III.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
전략 과제	III-1. 정책추진체계 강화 및 내실화

세부 사업	[III-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미흡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센터 종사자들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도모			
	사업 대상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I-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수당

핵심 가치	협력 (Cooperation)
정책 목표	III.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
전략 과제	III-1. 정책추진체계 강화 및 내실화

세부 사업	[III-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수당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센터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I-1-5.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능 분리·강화

핵심 가치	협력 (Cooperation)
정책 목표	III.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
전략 과제	III-1. 정책추진체계 강화 및 내실화

세부 사업	[III-1-5]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능 분리·강화				
근거 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5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현행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능의 분리·강화차원에서 분팀을 통해 외국인주민 전담팀은 개별 외국인주민 지원을 담당하고, 다문화가족 전담팀은 가족공동체 형성과 회복에 주안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성 제고			
	사업 대상	▣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I-1-6. 상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핵심가치	협력 (Cooperation)
정책목표	III.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
전략과제	III-1. 정책추진체계 강화 및 내실화

세부사업	[III-1-6] 상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근거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의2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법무부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그리고 경기도의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토대로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탄력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상·하위 계획 간의 연계성 및 수용성 제고			
	사업대상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I-1-7. 외국인주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확보

핵심 가치	협력 (Cooperation)
정책 목표	III.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
전략 과제	III-1. 정책추진체계 강화 및 내실화

세부 사업	[III-1-7] 외국인주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확보				
근거 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7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법무부에서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행정업무를 통해 확보되는 정보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 대상	▣ 외국인주민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여성가족과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주민자치과,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 III-1-8. 성과평가체계 구축

핵심가치	협력 (Cooperation)
정책목표	III.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
전략과제	III-1. 정책추진체계 강화 및 내실화

세부사업	[III-1-8] 성과평가체계 구축				
근거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5조의2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현행 고양시 성과관리체계(BSC)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및 적시성 제고			
	사업대상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상 개별 세부사업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유형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여성가족과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기획담당관				

▣ III-2-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핵심 가치	협력 (Cooperation)
정책 목표	III.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
전략 과제	III-2. 지역 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

세부 사업	[III-2-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근거 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의 행정참여(자문, 정책 제언 등)를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 공동체 형성 분위기 조성			
	사업 대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I-2-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내실화

핵심가치	협력 (Cooperation)
정책목표	III.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
전략과제	III-2. 지역 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

세부사업	[III-2-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내실화				
근거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사업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실질적인 기능 및 역할 부여를 통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실효성, 효과성 제고			
	사업대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예산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유형	■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여성가족과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 III-2-3. 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핵심 가치	협력 (Cooperation)
정책 목표	III.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
전략 과제	III-2. 지역 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

세부 사업	[III-2-3] 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근거 법령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사업 유형	역량	일자리	참여	수용	체계
					○
사업 특성	기존사업	신규사업	지속사업	단년사업	
		○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이 온연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때, 정책수혜자의 특성에 따른 정책의 선순환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과 지역사회복지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			
	사업 대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유형	국비	도비	시비	
				○	
	담당 기관	고양시	위탁기관	민간단체	
		○			
추진 유형	협력사업		단독사업		
	○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여성가족과				
	▣ 협력 부서 또는 기관(단체)명: 복지정책과				

3. 정책목표 III

핵심 가치	정책 목표	전략 과제	시행과제	2021				2022				2023				2024				2025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협력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	전략 과제	시행과제 III-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민간위탁사업 평가체계 내실화 III-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민간위탁사업 평가체계 내실화 III-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민간위탁사업 평가체계 내실화 III-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수당 - 민간위탁사업 평가체계 내실화 III-1-5. 외국인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기능 분리 강화 - 기능분류체계(BRM) 상, 중기증 분리 강화 - 1개과 체계 추진(다문화정책, 외국인지원, 다문화지원) III-1-6. 상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 상위 계획(5년)과의 연계 강화(5년) - 기본계획 수립 시점(n+1년) III-1-7. 외국인주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확보 - 지원 및 관리지원으로 비식별 정보 중심으로 획득 III-1-8. 성과평가체계 구축 - 고양시 성과관리체계와 연동 III-2-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 현실적합 정책개발 기능 강화 III-2-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내실화 - 정례회의 확대, 상의·의결 기능 강화 및 실무협의회 구성 III-2-3. 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양자 간의 정책적 선순환 체계 구축																					
				III-1.																				
				III-2.																				

제 5 장

제차 기본계획 평가지표

제1절 평가지표 체계

제2절 세부과제별 평가지표

제절 평가지표 체계

1. 성과관리 개요

제1차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각종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민간 기업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성과관리는 1990년대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발하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와 정부 효율성 제고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1990년 후반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사업평가, 정보화 평가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과관리 제도를 부분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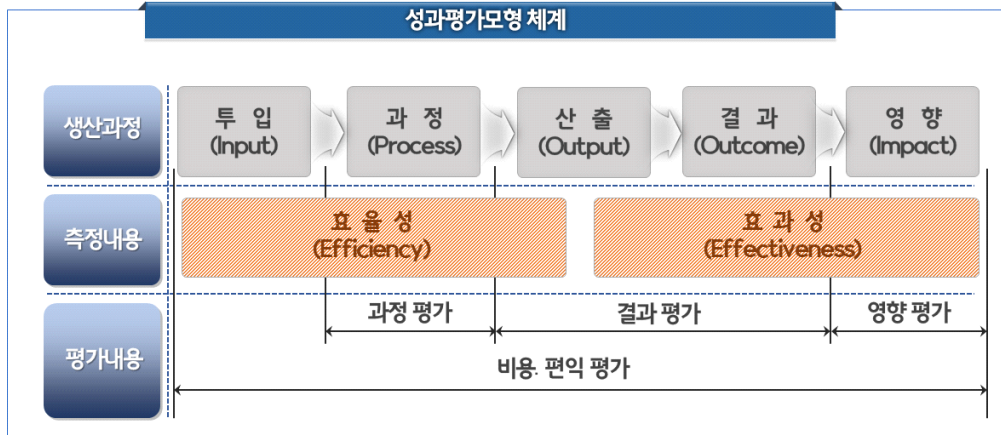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성과관리는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를 상호 약속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함으로써 조직의 활동 및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의 사명 및 전략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하여 정부조직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있다(이세구, 2003).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계획

-집행·점검-평가-환류의 단계로 구분되며, 각 개별 단계의 세부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결국 본 연구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제1차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개별 단위사업의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는 성과관리 측면에서 평가단계에 해당하며, 이러한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는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을 통해 구체화된다.

여기서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는 조직의 임무, 목표 등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 혹은 질적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며, 사업 활동의 과정에 따라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그리고 결과지표로 분류할 수 있고, 성과를 측정하는 유형에 따라 투입, 산출, 효율성, 효과성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이세구, 1999). 또한 계량화 여부에 따라 계량적 지표와 비계량적 지표로,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경성적 지표(hard indicator)와 연성적 지표(soft indicator)로 분류되기도 한다(라휘문·한표환, 1999).

[그림 5-1] 성과평가모형 체계



<출처> 윤영진(2003).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은 주어진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에 대하여 그것을 실제 구체적으로 달성한 정도를 측정하는 과정으로, 측정 단위는 특정기관, 조직단위 또는 사업단위가 기본단위로 설정되며, 이들 각자가 수행하는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산출물(output), 결과(outcome), 영향 및 파급효과(impact/effect) 등이 주된 초점이 된다(임성일·이효·이창균·이삼주, 2001).

더불어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는 산출물 또는 결과물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정·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조직 또는 사업활동별로 달성한 성과가 부여된 미션 및 목표와 비교하여 효과성, 능률성, 대응성 등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박경귀, 2005).

종합하면,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직무성과계약제도, 공기업경영성과평가 등을 도입·활용하고 있는 바, 「제1차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또한 기존 성과관리체계 내에서의 성과평가가 요구된다. 다만, 고양시 기획담당관 내 성과관리팀에서 관련 기능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제1차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세부단위과제의 시행에 따른 결과물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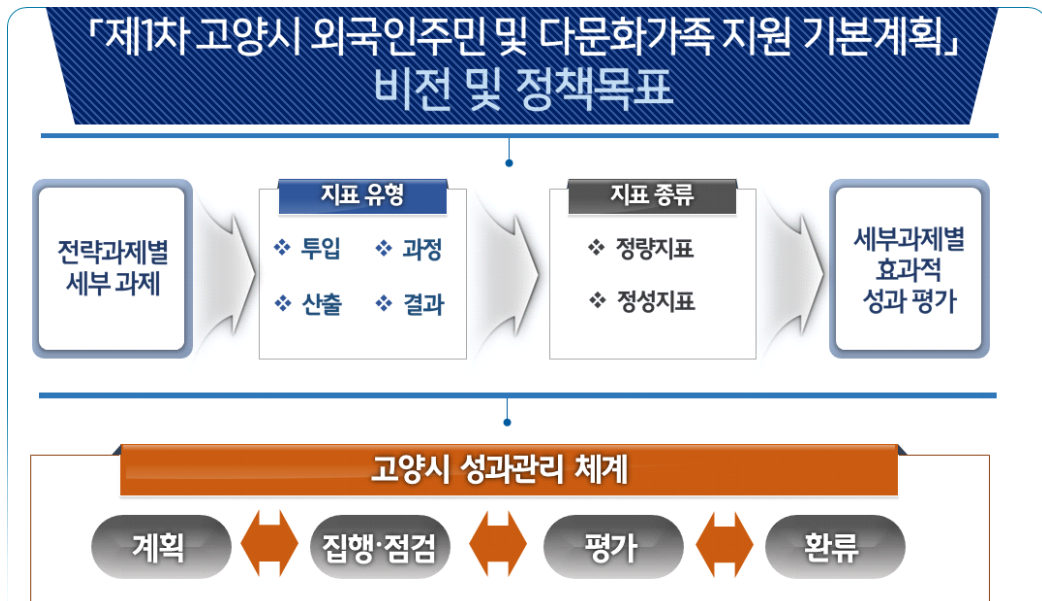
2. 평가지표 체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기존의 고양시 성과관리체계 내에서 「제1차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행에 따른 산출 및 결과물을 측정·비교할 수 있는 기준인 지표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적용되는 지표의 최소 단위는 전략과제별 세부과제가 되며, 지표의 유형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개발코자 한다.

이러한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최초로 법정 계획화되는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원활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평가의 지속성 확보를 통해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효과성과 적시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5-2] 평가지표 체계



제2절 세부과제별 평가지표

1. 세부과제별 공통지표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상의 정책목표별 세부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중 모든 세부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양시 성과관리제도의 체계와 연계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호)」 과 고양시의 ‘2020년 고양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에서 제시되었던 평가지표를 토대로 계획-관리-성과 환류단계로 구체화하였고, 평가항목별로 평가지표를 세분화하여 총 12개의 지표로 채택하였다.

각 평가지표별 지표유형은 투입지표가 5개로 가장 많고, 과정지표 4개, 산출지표 2개, 그리고 결과지표 1개로 설정하였으며, 지표의 종류에서는 정성지표가 9개, 정량 지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5-1] 세부과제별 공통지표체계

평가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지표유형				지표 종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적과 사업대상이 명확한가?	○				정성
		□ 사업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정한가?	○				정성
		□ 다른 사업과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				정성
		□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		○			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가?	○				정성	
		□ 성과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정량
관리	사업관리의 적정성	□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			정량
		□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정성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정성
성과 환류	성과달성 및 환류	□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정량
		□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정성
		□ 사업평가 결과를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정성

2. 세부과제별 특성지표

세부과제별 특성지표는 앞서 살펴본 공통지표가 투입 및 과정지표 중심으로 설정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세부과제를 통해 파생되는 산출 및 결과지표에 주안점을 두고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목표 I’에 해당하는 세부과제의 특성지표는 총 41개이며, 이 중 11개는 산출지표(정량)이고 30개는 결과지표(정성)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목표 II’의 경우에는 산출지표(정량) 4개, 결과지표(정성) 15개로 설정되었고, 마지막 ‘정책목표 III’의 세부과제별 특성지표는 총 16개이고, 산출 및 결과지표 각각 8개로 구성하였다.

[표 5-2] 세부과제별 특성지표체계

번호	세부과제 과제명	평가지표	지표유형		지표종류	
			산출	결과	정성	정량
I-1-1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수		○		○
I-1-2	한국어교육 운영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수		○		○
I-1-3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방문교육)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한국 및 고양시 생활환경 만족수준		○	○	
I-1-4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언어발달)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수		○		○
I-1-5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수		○		○
I-1-6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I-1-7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수		○		○
I-1-8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 지원	학부모의 사업만족수준		○	○	
I-1-9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수준		○	○	
I-1-10	외국인주민 한국어말하기 대회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I-1-11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정서 지원 확대 (솔롱고스 농구단 운영)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지역생활체육과의 연계 횟수	○			○

세부과제		평가지표	지표유형		지표종류	
번호	과제명		산출	결과	정성	정량
I-1-12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정서 지원 확대 (하구연 무지개리틀아구단 운영)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input type="checkbox"/> 지역생활체육과의 연계 횟수		○	○	
I-1-13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input type="checkbox"/> 취업연계 횟수	○		○	○
I-1-14	결혼이민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취업지원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이해교육 출강 횟수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이해교육 만족수준	○		○	○
I-1-15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경력 매칭 취업자 수	○		○	○
I-1-16	외국인주민 맞춤형 취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경력 매칭 취업자 수	○		○	○
I-1-17	거점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 통역안내원 배치	<input type="checkbox"/> 통역안내원 배치 수 <input type="checkbox"/> 통역안내원 및 외국인주민 사업만족수준	○		○	○
I-2-1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신문 배포 방법 다양화 수준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I-2-2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input type="checkbox"/> 지역공동체 활동 횟수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
I-2-3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input type="checkbox"/> 동아리모임 증가량	○			○
I-2-4	주민자치회 내 자발적 참여 기회 제공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input type="checkbox"/> 주민자치회 참여자 수		○	○	
I-2-5	지역봉사활동에 자발적 참여 기회 제공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input type="checkbox"/> 지역봉사활동 참여 횟수		○	○	○
소계		41	11	30	30	11
II-1-1	다문화가족 특화사업(통번역)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II-1-2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II-1-3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input type="checkbox"/> 서포터즈 활동 증가량	○			○
II-1-4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 운영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input type="checkbox"/> 전문상담 횟수		○	○	
II-1-5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II-1-6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책자 제작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II-1-7	거점별 다문화커뮤니티센터 확보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커뮤니티센터 개소 수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II-2-1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일반시민)	<input type="checkbox"/>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input type="checkbox"/> 문화수용성 인식수준		○	○	

세부과제		평가지표	지표유형		지표종류	
번호	과제명		산출	결과	정성	정량
II-2-2	다문화가족 캠프	▣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II-2-3	내·외국인이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커뮤니티 공간 개소 수	○			○
		▣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II-2-4	고양 다문화 어울마당	▣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II-2-5	한국문화수용성 증진교육(외국인주민)	▣ 정책수혜자 사업만족수준		○	○	
		▣ 외국인주민의 이주자 적응수준		○	○	
II-2-6	문화다양성 증진교육(공무원 등)	▣ 문화수용성 인식수준		○	○	
소계		19	4	15	15	4
III-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내부고객만족 수준		○	○	
III-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 내부고객만족 수준		○	○	
III-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내부고객만족 수준		○	○	
III-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수당	▣ 내부고객만족 수준		○	○	
III-1-5	외국인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기능 분리강화	▣ 2개 팀체제 구축 여부	○			○
		▣ 3개 팀, 1개과 체제 구축 여부	○			○
III-1-6	상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본계획과의 연계 수준		○	○	
III-1-7	외국인주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확보	▣ 데이터베이스 확보량	○			○
III-1-8	성과평가체계 구축	▣ 성과평가 시행 유무	○			○
		▣ 성과평가 결과 반영 수준		○	○	
III-2-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 정기회의 횟수	○			○
		▣ 정책반영 수준		○	○	
III-2-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내실화	▣ 조례 개정	○			○
		▣ 기능강화 수준		○	○	
III-2-3	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공식적 협력체계 유무	○			○
		▣ 연계 사업 유무	○			○
소계		16	8	8	8	8

참고문헌

[국내문헌]

- 라휘문·한표환(1999).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한국정책학회보, 8(2):93-114.
- 박경귀(2005).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활용의 유의점」, 한국정책평가연구원.
- 이세구(1999). 「성과지향 예산제도 및 통합재정수지 도입방안(1): 성과지향 예산제도 도입방안」, 시정개발연구원.
- 이세구(2003). 「성과관리제도시례와 지표개발-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사례로-」, 2003 KIPF 재정분석센터 워크숍 자료집.
- 임성일·이효·이창균·이상주(2001). 「성과측정을 위한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기반정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윤영진(2003). 「새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전성훈·오은지(2019).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고양시정연구원.
- 전성훈·오은지(2020).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고양시정연구원.

[기타자료]

- 법무부(2010-2019). “지역 및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 외국인정책위원회(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외국인정책위원회(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외국인정책위원회(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0).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2).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20).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현황」.
- 통계청(2009-2018). “인구 천 명당 외국인수(시도/시/군/구)”.
- 통계청(2010-2018). “결혼이민자 성별 현황”, 「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 통계청(2015-2019).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시군구”, 「인구총조사」.
- 통계청(2018). “성, 현재 국적 및 입국연도별 외국인-시도”, 「인구총조사」.
- 행정안전부(2009-2018).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행정안전부(2019).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Abstract

Study on the Master Plan for Foreign Residents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in Goyang City

Sunghun Jeon¹⁾, Eunji Oh²⁾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mid-long term Master Plan for Foreign residents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in Goyang 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First, The ‘Master Plan for Foreign Residents & Multicultural Family in Goyang City(Master Plan)’ is a legal plan based on 「Ordinance of the Foreign Residents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in Goyang City」 .

Second, The vision of the ‘1st Master Plan’ was set as “Inclusive & Reciprocity Multicultural Society”. Based on the value of equality, the vision implies efforts and willingness to share the benefits between Foreign Residents and Goyang Citizens within the community, to respect different cultures and lifestyles, and to create a harmonious coexistence society.

Third, The core values that ‘1st Master Plan’ should pursue are ‘Integration’, ‘Human Rights’ and ‘Cooperation’. ‘Integra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forming social interactions and common ties between people or groups of diverse cultures. ‘Human Rights’ is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Foreign Residents based on equality and diversity. And

¹⁾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²⁾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Cooperation’ means that both Foreign Residents and Goyang Citizens work together to create an inclusive and reciprocal multicultural society.

Fourth, The policy objectives set as ‘Implementation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Capacity Building and Participation Expansion(I)’, ‘Equal Social implementation based on the Diversity(II)’ and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based on cooperative governance(III)’.

Finally, The strategic tasks for ‘Policy Objectives I ’ were decided to ‘strengthen the self-reliance capacity of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expand opportunities for voluntary participation into the community’. And the strategic tasks for ‘Policy Objectives II’ were decided to ‘promoting human rights of vulnerable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In addition, the strategic tasks for ‘Policy Objectives III’ were set as ‘strengthening the policy promotion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relevant agencies in the region’